#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1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추미애·송재봉·이수진

이병진 · 송옥주 · 박희승

강득구 • 이해식 • 한정애

전용기 · 오세희 · 정춘생

황 희·허 영·정성호

김용민 • 박용갑 • 황정아

김 현 · 김용만 · 정을호

채현일 · 강준현 · 민형배

임미애 · 박해철 · 조인철

황명선 · 이광희 · 김영환

이성유 • 박홍근 의원

(3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 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복절"을 "광복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1		
따른 국경일 중 3·1절, <u>광복</u>	<u>광복</u>		
<u>절</u> , 개천절 및 한글날	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